

보도시점 2024. 2. 25.(일) 12:00 (2024. 2. 26.(월) 조간)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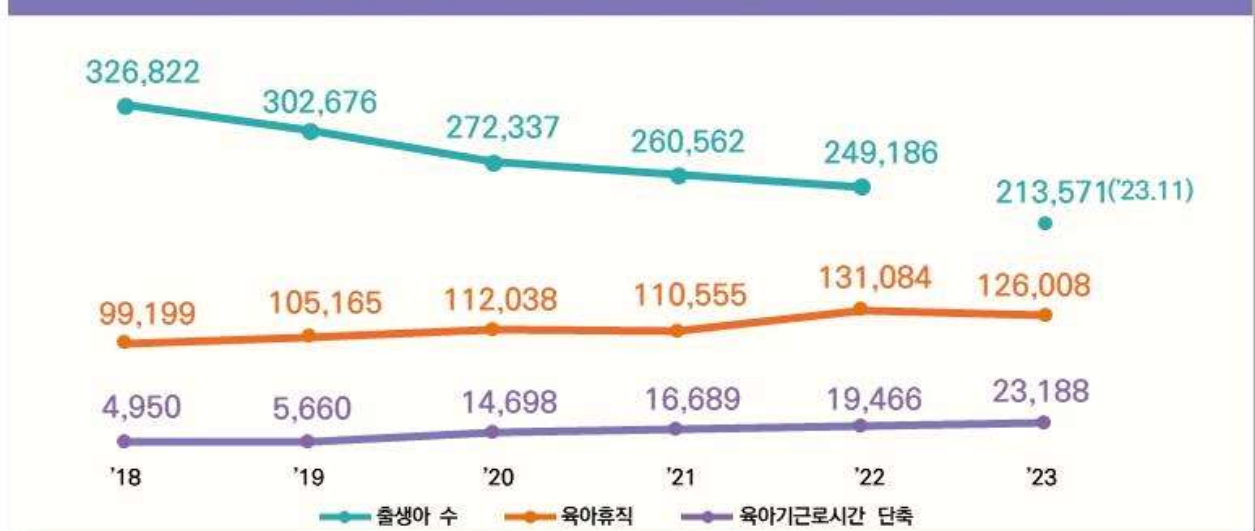
- 중소기업과 영아기(1세 미만)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 증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19.1% 증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23년 육아휴직자는 12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나타났다.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명)



< 육아휴직 >

출생아 수 감소에도 남녀 모두 영아기 사용비율 증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4,488명)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비중이 2.7%p 증가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 1세 미만 사용비율('22→'23년): ▲(전체) 64.3→**67%** ▲(남성) 32.6→**39%** ▲(여성) 77.2→**77.9%**

**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수: ('22년) 14,831명 → ('23년) 23,910명(61.2% 증가)

'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5,336명으로 28.0%, 여성은 90,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하여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 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학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루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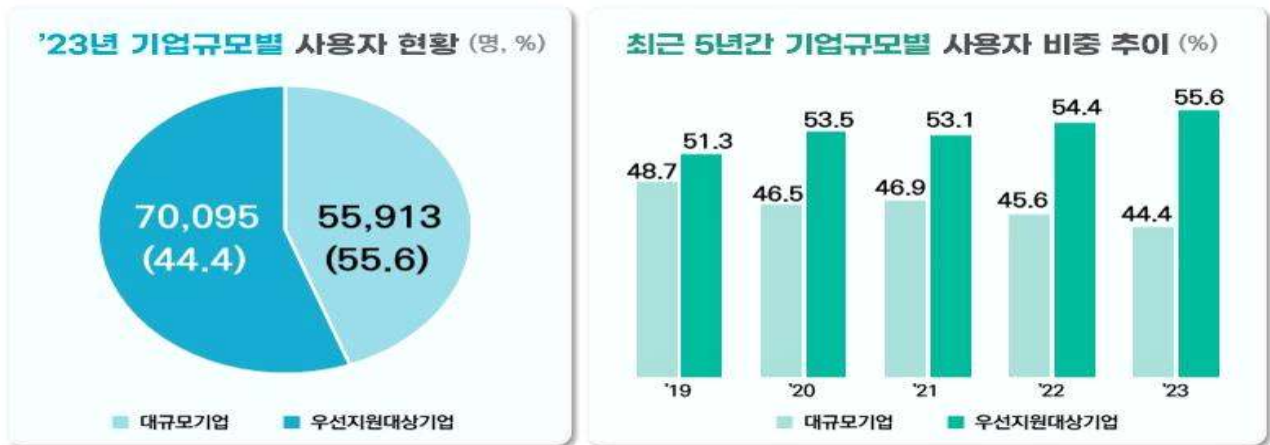
* 개편 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지원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 수: ('23.1월) 3,915명 → ('24.1월) 5,428명(+38.6%)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 비중 지속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0,095명으로 55.6%를 차지하며,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5,913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19년 51.3%에서 '23년 5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19년과 '23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육아휴직 사용자	'19년	17,843 (17)	12,976 (12.3)	12,698 (12.1)	13,861 (13.2)	47,787 (45.4)
	'23년	22,382 (17.8)	16,697 (13.3)	16,914 (13.4)	16,717 (13.3)	53,298 (42.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대폭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전년(19,466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722명,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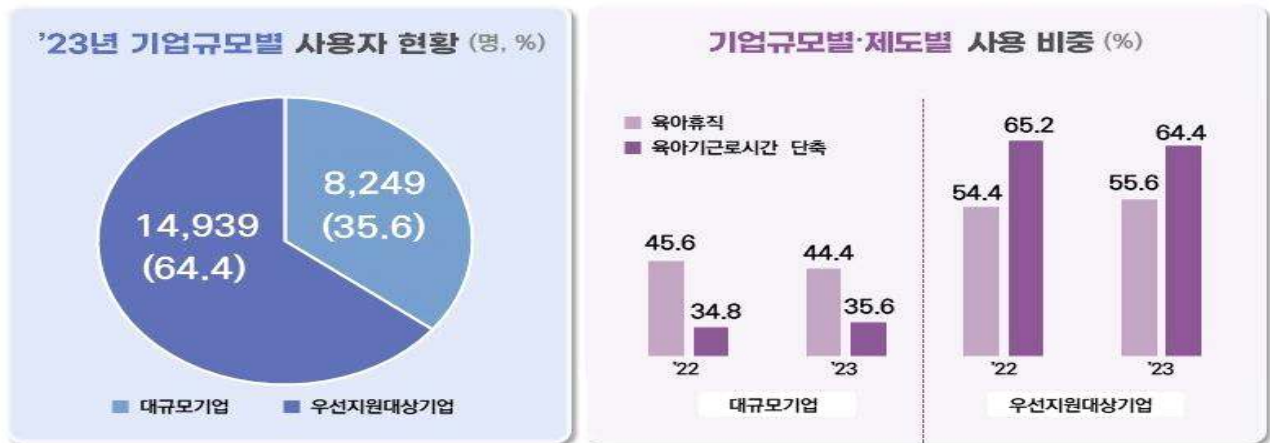
'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사용기간> (변경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최대 12개월)→ (변경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1년(최대 2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서 활용률이 높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23년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23년	6,210 (26.8)	4,029 (17.4)	2,733 (11.8)	2,420 (10.4)	7,796 (33.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영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많이 사용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6~7세 사용이 26.2%로 높게 나타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전년 (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추진 >

최근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6개월)*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6개월 추가 부여

한편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벨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인재채움뱅크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4.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계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지은 (044-202-7412) 임수훈 (044-202-7475)

붙임 1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

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상한액 인상 등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성에서 크게 증가

(단위: 명, %)

연도	구분	인원	
		남성	여성
'16년		89,975	7,616 (8.7)
'17년		90,122	12,042 (13.4)
'18년		99,199	17,662 (17.8)
'19년		105,165	22,297 (21.2)
'20년		112,038	27,421 (24.4)
'21년		110,555	29,041 (26.2)
'22년		131,084	37,884 (28.9)
'23년		126,008	35,336 (28.0)
			90,672 (72.0)

②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23년 70,09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5.6%

(단위: 명,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대규모 기업	51,240 (48.7)	52,113 (46.5)	51,868 (46.9)	59,738 (45.6)	55,913 (44.4)
중소기업*	53,925 (51.3)	59,925 (53.5)	58,687 (53.1)	71,346 (54.4)	70,095 (55.6)
합계	105,165	112,038	110,555	131,084	126,008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단위: 명)

구분	전체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18년	99,199	15,894	12,192	11,931	13,070	46,112
'19년	105,165	17,843	12,976	12,698	13,861	47,787
'20년	112,038	19,151	14,065	14,391	14,873	49,558
'21년	110,555	18,431	13,875	13,928	14,966	49,355
'22년	131,084	23,056	16,541	16,912	17,434	57,141
'23년	126,008	22,382 (17.8)	16,697 (13.3)	16,914 (13.4)	16,717 (13.3)	53,298 (42.3)

붙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통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수

- '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단위: 명, %)

연도	구분	인원	
		남성	여성
'16년	2,761	378 (13.6)	2,383 (86.4)
'17년	2,821	321 (11.3)	2,500 (88.7)
'18년	3,820	550 (14.4)	3,270 (85.6)
'19년	5,660	742 (13.1)	4,918 (86.9)
'20년	14,698	1,639 (11.1)	13,059 (88.9)
'21년	16,689	1,632 (9.7)	15,057 (90.3)
'22년	19,466	2,001 (10.3)	17,465 (89.7)
'23년	23,188	2,415 (10.4)	20,773 (89.6)

②기업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23년 14,93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4.4%

(단위: 명,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대규모 기업	1,598 (28.3)	5,286 (36.0)	5,615 (33.7)	6,768 (34.8)	8,249 (35.6)
중소기업*	4,062 (71.7)	9,412 (64.0)	11,074 (66.3)	12,698 (65.2)	14,939 (64.4)
합계	5,660	14,698	16,689	19,466	23,188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단위: 명)

구분	전체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18년	3,820	1,180	647	573	396	1,024
'19년	5,658	1,791	1,020	756	602	1,489
'20년	14,696	4,180	2,465	1,751	1,455	4,845
'21년	16,686	5,168	2,745	1,894	1,640	5,239
'22년	19,466	5,658	3,266	2,226	1,906	6,410
'23년	23,188	6,210 (26.8)	4,029 (17.4)	2,733 (11.8)	2,420 (10.4)	7,796 (33.6)

붙임 3

‘24년 일·육아 지원제도 확대 주요내용

※ 아래 내용은 2023.10.5.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의 주요 내용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24.下 시행 예정)>

제도	개정 내용
육아휴직제도	▶(기간 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u>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 부여</u> * 한부모 근로자는 모두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1회 → <u>3회로 확대</u> ▶(급여 지원기간) 5일 → <u>10일로 확대</u>(우선지원대상기업)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3일(1일 유급) → <u>6일(2일 유급)로 확대</u> ▶(급여 신설) <u>최초 2일분 지원</u>(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 만 8세(초2) → <u>12세(초6) 이하로 상향</u> ▶(기간 확대) 사용기간 최대 24개월 → <u>최대 36개월로 확대</u>(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12주 이내, 36주 이후 → <u>12주 이내, 32주 이후</u>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월 20만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인재채움뱅크) 권역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확대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강화('23년 3개소 → '24년 5개소)